

# 「技術士職務遂行과 엔지니어링 活動間의 法運用의 妙

An Explanation of the making smooth legal administration between P.E.,  
Professional Services & “Engineering Activities” in Korea

金 岫 根\*  
Kim, Suen Guen

<主要内容目次>

- |  |                          |
|--|--------------------------|
| 1. 머리말   | 3. 地方自治制와 發注當局(當事者)의 골머리 |
| 2. 假想訴訟對象爭점이 될 「엔지니어링 技術振興法과 同施行 및 施行規則上의 諸問題點 | 4. 關聯法規의 整備促求를 위해        |
| 2.1. 技術用役育成法の 廢法은 어찌하나                         | 5. 맺는말                   |
| 2.2. 登錄과 申告制 上의 假想시나리오                         | 6. 參考文獻 및 資料             |

## 1. 머리말

癸酉新春年을 마지하여 春氣躍動하나 큰 걱정이 되는 것은 (A) 技術士法과 (B) 엔지니어링 技術振興法을 管掌하는 한 部處인 科技處가 A & B 兩法の 法運用의 妙를 어떻게 合憲·合法的으로 하는데 있어서 法施行(1993. 5. 25 日頃以後)后的 일이 泰山과 같다.

즉, (B)法은 첫째 附則第2條에 技術用役育成法の 廢止條項이 없다(아리송한일로 느끼지는 하지만) 둘째 違法(憲)對象條項이 될 엔지니어링 技術振興法 第2條1項 “엔지니어링活動”과 “技術士職務”의 定義가 若干 다르게 보이나 實地로는 많이 다르다.

또, (B)法 第3條(支援施策의 강구)②項…… 技術士의 資格을 取得한 者의 雇傭을 擴大할 수 있도록 勸獎하며……, 그리고 同法 第4條 [엔지니어링活動主體의 申告]①의 1.……大統 領令이 定하는 基準\*以上에 해당하는者 等. 셋째 地方條例로서 登錄制에 의한 技術士 事務所 受注에 응할수 있게 하고, 申告制은 業體亂立에 의한 不實化을 防止하는 措置로서 制約을 加할수 있는 경우의 行政審判, 或은 訴訟對象이 될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諸問題點을 假想시나리오로 確定하고 檢討하여 보는것도 彼此間(技術士會와 用協側)에 有益할 것으로 推斷된다.

바라건대 申告制의 참뜻을 用協側이 잘 모르고 한뜻한(印象의으로) 느낌이 가므로 許可的

\* 土木(港灣 및 海岸技術士).

※ 申告制에는 基準이란 말을 쓸수가 없다.(要參照, 93年 2月號 技術士會誌 技術士法에 의한 登錄制와 엔지니어링 技術振興法에 관하여)

申告制\*가 되거나 或은 許可制로 바꾸는 것이 좋을 듯 하다고 본다.

## 2. 假想訴訟對象爭點이 될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과 同施行令 및 施行規則」上的 諸問題點

### 2.1 技術用役育成法の 廢法은 어찌하나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1992. 11. 25 法律第 4501號 制定公布)의 附則中 第1條와 第2條은 다음과 같다.

####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技術用役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技術用役業者중 第4條第1項 各號의 기준이상에 해당하는 者는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엔지니어링活動主體로 본다. 다만, 종전의 登錄事項과 이 法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事項이 다른 경우에는 이 法 施行후 2月이 내에 그 사항을 申告하여야 한다.」

問題點에 登場한 附則第2條가 왜 이렇게 立法이 되었을까? 立法過程上的 많은 節次를 考慮時 매우 아리송한 立法條項化가 되었는데, 會員諸兄께서는 表-1을 參照하면 異常한 느낌을 가질 것이다. 全面改正\*(技術用役育成法)이면 國內實定法の 改正法律의 舊法律은 附則第2條에서 ○○○法은 廢止한다고 하는 것이 立法原則이다.

종게 적으면 舊法과 新法の 2人三脚이 된 셈이라 할 수 있다.(즉, 舊法の 兩다리를 걸치는

것과 같은것) 한例로서 舊技術士法은 廢止法律第2994號로 1976. 12. 31. 3年이 所要되어 廢法이 된것처럼 時間餘裕를 갖기위한 意圖인지, 立法失手는 아닌 듯한데(많은 法律專門家가 關與하였기에)? 何如間 廢止法律案을 언제 누가 할것인지 지켜볼일이 남아 있을 것 같다.

### 2.2 登錄과 申告制上的 假想시나리오

假想시나리오 (1)技術士職務와 엔지니어링活動에 關한 定義: 定義上的 判異點에 關하여 受注職(業)務上的 區別(或은 限界)를 發注者가 어떻게 行政 處理하느냐?

이것은 嚴然히 違憲 訴訟對象이 될수 있다. (細部說明 省略). 參考로 摘記하건대 日本의 ENAA(財)엔지니어링振興協會,\*1978年設立)에서는 「“엔지니어링”이라함은 人·材料·設備·機械等の 統合된 시스템을 對象으로 하고, 그 設計·要素調達·工事運用을 施行하는 경우에 生기는 結果가 附與된 諸目的에 對해서 最適形態로 實現되도록 施行하는 “一聯(連)의 活動”을 말하다」라고 定義하고 있다. 『즉, “엔지니어링”은 多分野에 亘한 「人間의 知惠」를 結集·統合하여, 一定한 課題를 達成하는 科學技術的인 活動이라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엔지니어링産業\*(Enginerring Industry)”이라 함은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활동을 代價의 對象으로서 提供하는 産業을 總稱하고 있다.

이 “엔지니어링産業”에서의 “엔지니어링”이라 함은, 그것을 機能面에서 把握하여 보면 프로세스(process : 工程)의開發, 設計前컨설팅(Consulting, 技術的 相談·諮問), 基本設計, 詳細設計, 機器·資材의 調達, 建設, 試運轉, 操(作)業(operation)指導·運轉管理와 이러한

※ 93年 2月號 技術士會誌 筆者原稿의 表-6 要參照  
註記 : 表-1 事例中, 國民年金法の 附則처럼 條文化되어야 한다.  
※ 法の 目的과 定義가 原法과 判異時에는 新立法이라 主張한다.  
※ 日本通商産業省關聯團體, 會員約140個社

表一 法改正時, 附則에 廢止法條項明事例表(SGK)(無順)

	改正法名(舊法名稱)	法律施行年月日 號數(改正次數)	附則條項의 廢法明示條項	備 考
1	自然公園法(公園法)	1980. 1. 4 第3243號 (4次)	②[廢止法律] 公園法은 이를 廢止한다. ③[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公園法에 의하여 行한 許可 및 公園計劃의 決定 등 處分이나 기타의 行爲는 이 法에 의하여 行한 것으로 본다.	
2	建築法(朝鮮市街地計劃令)*①	1962. 1. 20 第984號(14次)	②[廢止法令] 1034年 6月制令 第18號朝鮮市街地計劃令은 이를 廢止한다.	※①1934年 6月制令
3	道路法(朝鮮道路令)*②	1961. 12. 27 第871號(8次)	檀紀4271年 制令第15號 朝鮮道路令은 이를 廢止한다.	※②檀紀4271年 制令
4	國民年金法(國民福祉年金特別會計法)	1986. 12. 31 第3912號(1次)	第2條(다른法律의 廢止 등) ①國民福祉年金特別會計法은 이를 廢止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止되는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國民福祉年金基金은 이 法에 의하여 設置된 國民年金基金으로 본다.	
5	環境政策基本法(環境保全法)	1990. 8. 1 第4257號(1次)	第2條(廢止法律) 環境保全法은 이를 廢止한다. 다만, 環境保全法 第9條, 第9條의 1, 第69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自然環境保全에 관한 사항 및 環境保全法 第43條 내지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費用負擔에 관한 사항은 계속 그 效力을 가진다.	
6	有害化學物質管理法(毒物 및 劇物에 관한 法律)	1990. 8. 1 第4261號)	第2條(다른法律廢止) 毒物 및 劇物에 관한 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附則 第10條(다른法律관의 관계)가 또 있다.
7	戶籍法(세가지 法令)	1960. 1. 1 第535號	第142條(廢止法令) 다음 各號의 項령은 폐지한다. 1. 朝鮮民事令中 戶籍에 관한 규정 2. 朝鮮戶籍令 3. 戶籍臨時措置에 관한 軍政法令 4. 기타 본 법에 저촉되는 호적에 관한 法條項	附則 第136條 除(62. 12. 29) 第137條(定義) 부칙에서 舊法이라 함은 본 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령 또는 법령중의 조항을 말한다. 第138條(舊法에 의한 戶籍) 舊法의 規定에 의한 戶籍 및 假戶籍은 이를 본 법의 規定에 의한 戶籍 또는 假戶籍으로 본다.
8	水道法	1961. 12. 31 第939號(2次)	(廢止法令) 檀紀4234年 9月府令第61號水道上水項 保護規則 및 檀紀4247年 9月 總則 第50號水道에 관한 件은 이를 廢止한다.	
9	農漁村開發特別措置法	1990. 4. 7 第4228號	第2條(다른法律廢止) 해당法律에 整理	(以下未完)

것에 關聯되는 事業管理(project management)의 業務活動이라고 할수있다.(R-7의 3面 要參照)』또, 『엔지니어링産業은 크게 分類하면 세가지로 構成된다. (1)「프로세스의 開發」 이미 發見되어 있는 科學原理를 工業化하여, 經濟性이 있는 플랜트(plant)로 만들어 내는 分野. (2)「플랜트나 施設의 建設妥當性檢討」 技術的, 經濟的으로 플랜트나 施設의 建設의 妥當性은 檢討하여, 그것이 住民에게 附與되는 社會的影響이나, 住民의 리액션(Reaction : 對應)等도 研究하는 分野. (3)「플랜트나 施設의 設計·建設」 設計에서 機械資料의 購入, 建設 工事, 試運轉까지 施行하는 分野』

따라서, 이法(B)의 法律名稱은 “플랜트·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或은 産業設備技術振興法”으로 고치는 것이 妥當한 것이 分明하고, 웃기는 일로서 日本에서만 쓰이는 “엔지니어링産業”이란 말을 輸入(導入)한것도 奇異한 일이다. 註記 : 90年 4月 24日 科技處主權 技術士法制定에 關한 討議와 엔지니어링 産業育成을 위한 懸案問題檢討會議\*〈實은 技術用役育成法改正을 企劃하였고 會議(2時間所要)도 (B)法推進內容이었다〉에 本人이 參席하였든과 日本式 英語造語를 왜 使用하느냐 指摘한과 있었다. 더욱이 警嘆할 일은 B法에서,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엔지니어링活動”이라 함은 科學技術의 知識을 應用하여 사업 및 施設物에 關한 企劃·妥當性·調査·設計·分析·購買·調達·試驗·감리·試運轉·評價·諮問·指導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活動과 그 活動에 대한 事業管理를 말한다.(以下 省略함)』

너무나 恰似한 法定義가 되었다는 것이다. 結局 이 定義는 제도습으로 還元하지 않으면

※ 當時의 崔永煥次官이 主宰하였다.

※ 商工部所管으로 「産業設備輸出促進法」(1978. 12. 5法第3123號)있다.

違憲訴訟이 될 수 있다는 點을 우리는 銘心 하 여야 한다. 換言하면 技術士職務의 한部分(定義上)이 되어 있는 所謂 “엔지니어링活動”을 플랜트·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或은 産業設備\*技術振興法으로 解釋하는 길 밖에 없지 않나 思料된다.

假想시나리오[2] (B)法第3條(支援施策의 講究)②項……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엔지니어링活動主體가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技術士의 資格을 취득한 者의 雇傭을 擴大할 수 있도록 勸獎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講究할 수 있다.』

위條文은 技術士法第5條(技術士活用施策)와 相反되므로 完全無缺한 違憲(法)條文이 된다고 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法條項改正推進黨를 提案한다. 즉, 第1案 : 위條項을 完全히 削除한다. 그리고, 第2條으로는 法條文의 文脈을 「………技術士의 資格을 取得한 者의 活用施策을 講究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假想시나리오 [3]非公式入手된 (B)法の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施行令案과 同施行規則案 (1993. 1. 31. 現在) ; 表-2와 같이 申告制이므로 基準이란 말을 쓸수가 없다.(要參照, (B)法第4條)

『(B)法第4條(엔지니어링活動主體의 申告)

①다음 各號의 엔지니어링活動主體는 大統領이 정하는 바에 따라 科學技術技術處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第2號의 경우에는 그 部署가 속한 企業이 申告하여야 한다.

1. 엔지니어링活動을 주된 營業의 手段으로 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이상 에 해당하는 者
2. 엔지니어링活動을 전담하기 위한 企業내의 專擔部署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

表-2 科技處立法豫告1993-12號의 拔萃內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발췌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발췌분)
<p>제3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①법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준이상을 갖춘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자임을 알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것.</li> <li>2.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활동만을 영업의 수단으로 할 것</li> <li>3. 총리령이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독립된 엔지니어링설비기자재를 갖출 것</li> </ol> <p>③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에 해당하는 부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부서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하는 부서임을 알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것</li> <li>2. 설계를 포함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li> <li>3. 총리령이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엔지니어링설비기자재를 갖출 것</li> <li>4. 다른 부서와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을 것</li> </ol>	<p>제2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서) ①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p> <p>②제1항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엔지니어링활동개요서</li> <li>2. 영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또는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빙서류</li> <li>3.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구조직도(엔지니어링전담부서의 경우에는 당해기업의 기구조직도를 포함함)</li> <li>4.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li> <li>5. 직원현황(엔지니어링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전담부서의 직원에 한함)</li> <li>6. 주요 엔지니어링설비기자재 보유명세서</li> <li>7. 엔지니어링활동수행실적명세서</li> </ol> <p>제3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기준) ①영 제3조제2항제3호 및 동조 제3항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본금은 다음 각목의 1이상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1억원(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출자증권 100좌이상을 포함한다)</li> <li>나.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10억원(엔지니어링공제조합출자증권 100좌이상을 포함한다).</li> </ul> </li> <li>②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기사 1급이나 과학기술분야(과학기술처장관이 고시하는 전문분야는 과학기술분야여부를 불문한다)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자 10인 이상일 것</li> <li>③영 제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하는 자이어야 한다.</li> <li>④영 제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설비기자재는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서가 전용하는 공간안에서 엔지니어링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설비기자재이어야 한다.</li> </ol>

이상에 해당하는 部署 〈以下省略〉

申告制의 機能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表-2 : 93. 2. 22 (B)法の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시행령(案)(立法豫告: 第1993-12號, 1993. 2. 22)(科技處立法豫告第1993-12號, 1993. 2. 22)

申告制에는 세가지型式이 想定할수 있으나, 같은 申告制일지라도 그것이 「規制·監督」行政領域에서 쓰일 경우와, 「保護·造成」行政領域에서 驅使될 경우, 或은 「調整」行政領域에서 採用될 경우에는 그 行政手段으로서의 機能이나 役割은 반듯이 같지 않다는 것이다.

申告制가 「規制·監督」行政領域에서 驅使될 경우에 많은것은 「事前 査」로서 쓰이는 일이 많고, 더욱이 다른 査(check)手段, 例컨대 許可나 認可등을 쓰지 않고 申告制를 採用하였다고 하는, 各種의 事前査手段間의 選擇問題를 加味해서 考慮하면, 形式의 事前査型의 行政手段으로서 申告制를 採用했던 것을 意味하게 된다. 그 結果, 이 領域에서 쓰이는 申告制는 申告制의 세가지型式中 「形式의 事前査型」의 申告制가 採用되어 있다고 理解할수가 있다.

한편, 「保護·造成」行政領域에서 申告制가 쓰이는 경우에, 「保護·造成」의 對象이 되는 業種이나 企業인가 그 與否의 査機能을 遂行하는 同時에, 「保護·造成」의 「對象把握」을 申告制로서 施行하려고 하는 意味을 갖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領域에서 쓰이는 申告制, 形成的 「事前査型」\*를 함께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調整行政作用領域에 있어서 申告制가 쓰이는 意味는 이것도 多樣할 수가 있다. 調整의 舞臺에 登場하는 當事者나 調整對象의 査 或은 當事者나 對象範圍를 미리 把握하기 위해 쓰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領域에서 驅使되는 申告制의 機

能은, 當事者·對象의 査을 施行하는 경우에는 「形成的 事前査型」, 當事者·對象의 把握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事實把握型」의 申告制가 쓰이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考慮하면, 「規制·監督」, 「保護·造成」 或은 「調整」 各其 行政作用領域마다 規制目的에 對應하는 規制手段의 選擇, 즉, 行政手法의 選擇으로서 申告制가 採用되었든 것으로 된다.

### 3. 地方自治制와 發注當局(當事者)의 끝머리

#### 3.1 地方自治法과 關聯事項

91年 6月 廣域選舉實施以後, 地方自治가 施行된지 이미 1年有餘가 지났다.

지금까지 技術士立法推進을 위해 國會쪽에만 쏠여왔는데, 인제는 地方議會에도 關心을 가져야 할 時期에 이르렀다.

技術士 職務遂行上 法常識取得에는 表-3과 같은 우리나라 法令의 體系位階를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地方自治法中 우리에게 緊要한 것은 各條項中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본다.

- 地方自治法(1988. 4. 6 法第4004號)
- 第8條[事語處理와 基本原則] (拔萃分)
- 第9條[地方自治團體의 事務範圍]
- 1. ....
- 2. ....
- 3. ....
- 4. 地域開發 및 住民의 生活環境施設의 設置 管理에 관한 事務
  - 가. 地域開發事業
  - 나. 地方 土木·建設事業의 施行
  - 다. 都市計劃業의 施行
  - 라. 地方道, 市郡道의 新設·改修 및 유지
  - 마. 住居生活環境改善 및 獎勵 및 지원

\*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이 여기에 屬한 申告制條項을 갖고 있다고 본다.

- 바. 農村住宅改良 및 聚落構造改善
- 사. 自然保護活動
- 아. 地方河川·準用河川 및 小河川의 管理
- 자. 上水道·下水道의 設置 및 管理
- 차. 簡易給水施設의 設置 및 管理
- 카. 道立·郡立 및 都市公園, 綠地 등 觀光·休養施設의 設置 및 管理
- 타. 地方軌道事業의 經營
- 파. 駐車場·交通標識 등 交通便宜施設의 設置 및 管理
- 하. 災害對策의 수립 및 집행
- 거. 地域經濟의 육성 및 지원

5. 以下省略

第11條(國家事務의 처리제한) 地方自治團體는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國家事務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法律에 이와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外交·國防·司法·國稅 등 國家의 存立에 필요한 事務
2. 物價政策·金融政策·輸出入政策 등 全國的으로 統一의 처리를 요하는 事務
3. 農林·畜·水產物 및 糧穀의 需給調節과 輸出入 등 全國的 規模의 事務
4. 國家綜合經濟開發計劃, 直轄河川, 國有林, 國土綜合開發計劃, 指定港灣, 高速國道·一般國道, 國立公園 등 全國的 規模 또는 이와 비슷한 規模의 事務
5. 勤勞基準, 測量單位 등 全國的으로 基準의 統一 및 調整을 요하는 事務
6. 郵便, 鐵道 등 全國的 規模 또는 이와 비슷한 規模의 事務
7. 高度의 技術을 요하는 檢査·試驗·研究, 航空管理, 氣象行政, 原子力開發 등 地方自治團體의 技術 및 財政能力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事務

第15條(條例)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범위 안에서 그 事務에 관하여 條例를 制定할 수 있다. 다만, 住民의 權利制限 또는 義務賦課에 관한 사항이나 罰則을 정할 때에는 法律의 委任이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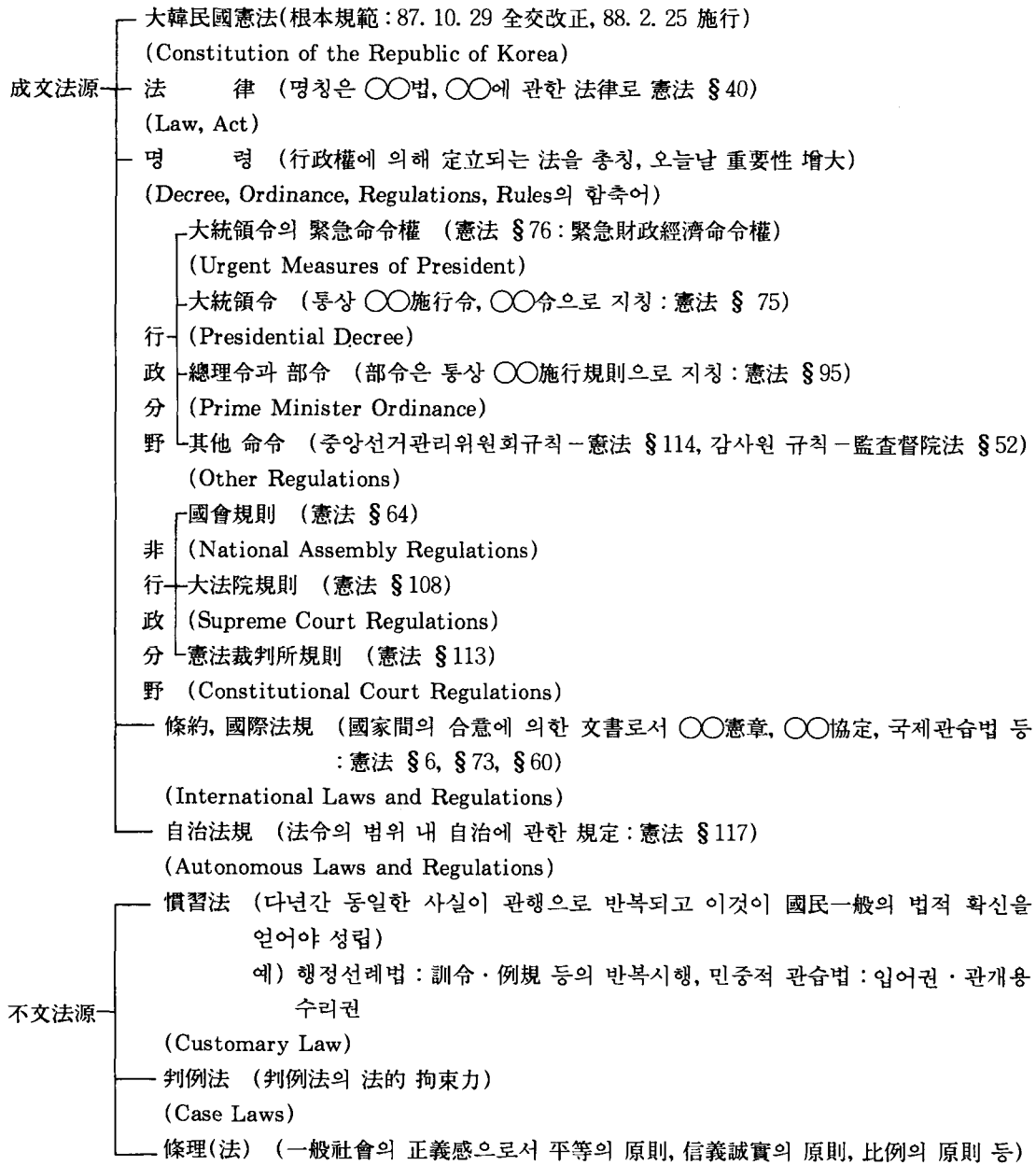
表-4 現行自治法規의 現況表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	교육규칙
서울特別市	237	164	53
자치구	1,569	1,104	
釜山直轄市	243	141	36
자치구	944	435	
大邱直轄市	246	137	41
자치구	553	315	
光州直轄市	209	127	28
자치구	321	176	
仁川直轄市	211	119	31
자치구	490	243	
大田直轄市	207	133	34
자치구	428	217	
京畿道	191	99	35
시·군	5,032	2,317	
江原道	163	98	38
시·군	2,712	1,233	
忠清北道	157	91	34
시·군	1,628	683	
忠清南道	160	96	26
시·군	2,652	1,167	
全羅北道	160	89	25
시·군	2,465	1,182	
全羅南道	164	98	37
시·군	3,387	1,306	
慶尙北道	161	82	33
시·군	4,024	1,844	
慶尙南道	170	90	32
시·군	3,466	1,511	
濟州道	138	72	31
시·군	505	238	
광역지방자치단체(15)	2,817(188)	1,636(109)	514
기초지방자치단체(260)	30,176(116)	13,971(54)	

※시·군·자치구의조례·규칙 숫자는 당해 시·도 전체의 시·군·자치구 조례·규칙 숫자임.(1991. 12. 31 現在)  
 ※ 지방자치단체란( )안의 숫자는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숫자임.  
 ※ 조례·규칙란의 ( )안의 숫자는 시·도 및 시·군·자치구당 평균임.

出處: 朴奉國著「條例立法의 理論과 實際」壯元出版社發刊

表-3 우리나라 法令의 體系位階表(R-5에서 拔萃)



\*위의 表는 편의상 살펴본 것에 불과하며 각 法令의 效力이 表에 있는 順序대로 優劣의 順位가 되는 것은 아니다.

第16條(規則)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法令 또 는 事務에 관하여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是 條例가 委任한 범위안에서 그 權限에 속하 第17條(條例와 規則의 立法限界) 市·郡 및



自治區의 條例나 規則은 市·道의 條例나 規則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現行自治法規의 現況)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그 기능이 활성화되고 자치사무의 영역이 확대·개발되어 조례입법의 범위와 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조례와 규칙의 제정은 물론 기존 자치법규의 개폐 등의 정비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별 자치법규의 현황은 表-4와 같다.

地方自治制實施以前에는 例로 關心對象이 아니었으나 實定法規(國會立法된)에다 地方條例가 上乘한다는 法體系理論에 더욱더 熱意 檢討하고 地方條例化에 對한 關心度가 높아 져야 할것이다. 以下에 地方條例例示와 制定의 경우等 引用摘示한다.

[예시](地方條例)

- 서울特別給水條例中改正條例(一部改正)
  - 서울特別市給水條例施行規則改正規則(全部改正)
  - 서울特別市군장성소유자동차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廢止)
- (以下省略)

2) 制定의 경우

- 法 律……○○法, ○○法律
- 大統領令……○○法施行令, ○○令, ○○職制
- 部 令……○○施行規則, ○○規則
- 自治法規……○○條例, ○○規制
- 訓 令……○○規程, ○○要領(앞으로는 ○○規程으로 統一이 바람직)
- 例 規……○○指針, ○○規程, ○○指示, ○○計劃, ○○要領(요강), ○○守側\*

行政規則\*을 形式에 의해 區分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겠다(政府公文書規程施行規則 §2).

㉞訓令: 訓令은 下級機關에 걸쳐 그 權限의 行使를 一般的으로 指揮·監督하기 위하여 발하는 行政命令이다.

㉟指示: 指示란 上級機關이 下級機關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行政命令을 말한다.

㊱日日命令: 日日命令은 當직·출장·특근·휴가 등의 日日業務에 관한 行政命令을 말한다.

㊲例規: 例規는 行政事務의 準則으로서 위에 든 여러 行政命令이 이외의 것을 말한다.

㊳告示: 告示는 行政廳이 결정한 事項, 其他의 일정한 事項을 一般에게 알리는 通知行爲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나, 告示의 形式으로 一般處分의 성질을 가지는 行爲를 할 때도 있고, 告示가 特別한 法條와 結合되어 실질적으로 法規의 內容을 補充하는 法規的 性質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法律 §2의 告示등)

<技術士會의 境遇>

- 法 律…技術士法
- 大統領令…技術士法施行令
- 部令(科技處)…技術士法施行規則
- 自治法規\*…地方條例, 地方規則(假想)

例. 技術士法施行·京畿道議會·登錄制實施地方條例 或은 서울特別市議會 登錄制實施地方條例

따라서, 技術士法第5條技術士(法用施策)에 의거하여 同施行令에는 “技術士活用을 위한 地方條例化의 施策을 講究한다는” 法條文이 草案되어 技術士會案으로 定해 진 바 있었다.

더욱이 例컨대 서울特別市가 作成한 “自治法規上의 基本的規定(拔萃)과 條例事項”을 보

\* 行政命令·行政規程이라고 한다(著에 따라)  
\* 技術士會의 地方自治下の 受注業務推進上 最大關心事가 되어야 한다.

면 매우 興味를 갖는 것은 資格賦與法規인 경우, 無資格者의 業務從事禁止事項이 있다는 것이다. 즉, (B)법에 의한 申告制業體를 受注業務를 制約할수 있는 경우도 생길수 있을 것이다.

『自治法規上の 基本規定(拔萃)과 條例事項(R-5에서 引用)

### 1. 資格規定(資格賦與法規인 경우)

資格規定이라 함은 일정한 技術, 知能, 또는 知識을 필요로 하는 自由職業이나 技術職業에 대하여 이에 종사함에 필요한 일정한 資格과 그 賦與方法·節次 등을 規定하는 法規의 規定을 말하며, 여기에는 資格者의 名稱, 해당 業務範圍, 無資格者의 業務從事禁止, 名稱使用制限, 資格賦與方法, 試驗資格者의 業務와 責任, 資格者의 團體組織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다.

### 2. 條例事項

條例事項이란 條例로써 規定할 事項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을 유형별로 大分하면, 첫째로 住民의 權利·業務에 관한 條例와 地方自治團體의 內部組織이나 運營에 관한 條例, 둘째로 委任條例(法令의 委任)와 職權條例, 셋째로 必要的 條例(法令에서 정하도록 규정)와 任意的 條例나에 따라 條例로써 規定할 사항이 달리 될 수 있는바 條例事項의 一般的 基準은 다음과 같다 할 수 있을 것이다.

- 住民의 權利·業務에 관한 事項
- 能力的 規定에 관한 事項
- 費用의 支辨에 관한 事項
- 委員會의 設置에 관한 事項
- 公共施設의 設置에 관한 事項
- 特別會計의 設置에 관한 事項
- 地方稅 및 使用料·手數料·負擔金의 賦課·徵收에 관한 事項

- 地方會議의 權限에 속하는 事項
- 其他 法令에서 條例로 정하도록 規定한 事項』

### 3.2 地方自治發注當事者의 골머리

技術士職務와 엔지니어링活動間에 摩擦이 생길수 있는 경우 地自制當事者의 行政運用에 있어서 (A)와 (B)法間의 法施行上 골머리를 앓다가 또는 民意에 따라 登錄制에게만 惠澤을 주는 地方條例가 地方法規化가 되지 않는다는 保障이 없다는데 큰 問題꺼리가 앞으로 생길수 있다고 豫見되는 것이다. 참으로 稀貴하고 豫測不能한 法運用上の 論爭이 發生할 素地가 너무나 많이 가로 놓여 있는 것 같다.

### 4. 關聯法規의 整備促求를 위해

約 4年前인 89年 12月末에 있었던 電氣通信 技術士專門分會가 事件 「89구16579科學技術處 告示處分無效確認請求의 訴訟\*」을 提起하였다는 일이 있었다. 電氣通信專門分會가 1991年 4月訴取下 하였기에 會員各者의 腦裏에 사라지기는 하였지만 技術士會創立以來 初有之事였으나, 技術士法推進에 陰陽으로 貢獻한 바 크다고 본다. 豫想하던대 93年下半期에 이르러 (A) & (B)兩法の 施行發效時에는 一種의 過渡期現象으로 因해 舊法에 의한 既得權喪失念慮가 많은 所謂 技術用役業體나 或은 特定 專門分會의 技術士가 結審判決을 提起하는 일이 前然없다고 말할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前述한 假想시나리오外에 諸問題點이 發生할 素地가 많으므로 行政當局은 이것을 事전에 豫防措置하는 一環으로서 法體系의 違法(憲)條項의 合憲化·合理化·民主化·技術士의 活性化 등으로 法整備를 表-5을 參考삼아 早速히 積極的으로 推進하시기를 新政府에 거는 期待는

※ 其他 法令에서 條例로 정하도록 規定한 事項  
※ p.p.35 要參照, 本會誌 第25卷第3號(1992. 6月號)

매우 큰것이고, 法體系의 整備를 한다는 大選公約을 믿고, 整備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5. 맺는말

1992年 11月 25日 法律第4500號로 制定된 技術士法은 半復活이라 할수 밖에 없다. 解法으로서 完全히 統合된 單一法이 아닌 一種의 職務(業務)法으로서 一人單脚(한쪽다리)의 肢體

不自由者와 같은 法으로서는 활성화가 未洽함으로, 衡平의 原則에 立脚해서 資格試驗條項 및 其他 技術士會가 願立法하였든 소위 國家技術士法案대로 復活되기를 祈禱하는 바이다. 더우기 엔지니어링 技術振興法은 申告制에서 “許可的申告制” 或은 許可制로 改正되어야 한다는 輿論이 沸騰하고 있는 事實을 直視하기를 切望한다(1993. 1. 28. 脫稿)(하나, 1993. 3. 20 校正時(B) 法施行令立法豫告分追加함)

表-5 技術士法에 의한 技術士活性化關聯法規整備要望(第1段階)目錄表(SGK)

優先 順位	實定法規名稱	制定公布 年月日	法律第 號	主要한 事由	備 考
1	技術用役育成法	1973. 2. 5	2474	①法の 廢止法律案國會早速上程要求	상세한 것은 本稿에 있다.
2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1992. 11. 25	4501	違憲條項의 改正을  wish하여 許可制 或은 登錄制로 要 轉換 및 法名變更	-
3	建設技術管理法	1987. 10. 28	3934	高級技術者라는 非法定用語削除要求	92.6月號 本誌要參照
4	㉠國家技術資格法의 改正 과 ㉡技術士法改正 推進	㉠1973. 12. 31 ㉡1992. 11. 25		㉠資格(技術士)試驗 ㉡統合單一法으로 還元하기 爲해 資格試驗復活	
5	活用施策에 關聯된 實定法規의 改正要求	〈各種法規11種〉		關聯施行令改正으로 大部分可能하다.	92. 12月號技術士會誌 30面表-1要參照
6	地方條令과 規則에 關聯된 法規의 改正要求			地方自治의 活性化要因上 必要하다.	本稿 要參照
7	基他關聯法規一式 (以下未完) 註記: 技術士會의 輿論收斂에 따라 더 있을 수 있다. (1993. 1. 31)				

### 참 고 문 헌

1. 「自治體行政の法と制度」(學陽書旁) 1980年版
2. 「新法律用語辭典」, 執筆代表 李炳泰, 法文出版社 1992. 3. 25 發行
3. 「經濟行政法 - 經濟政策形成と政府介入手法-」 佐藤英善著(日本成文堂 1990. 4. 15 發行)
4. “地方自治法典” 朴銳旣外 5人共編著, 法典出版社 1991年版
5. 「地方自治團體의 法務行政實務」 서울特別市發行

정간위심의필 91-45-6-9.

韓國컴퓨터産業(印刷)(株) 組版·印刷

6. 「條例立法의 理論과 實際」 朴奉國 國會法制司法委員會 立法審議官(理事官), 壯元出版社 1992. 5. 25 發行
7. 「프로젝트·마네ジメント(projeit Management) 用語辭典」 日本エンジニアリング振興協會發行註記: 1987年 用協이 韓譯版(筆者)이 出版되어 있다.